

KRESG Proxy Voting Guideline

# 한국 ESG 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

##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

제정 2014.11.24.

개정 2016.01.29.

개정 2016.09.23.

개정 2017.02.14.

개정 2020.11.12.

개정 2022.01.28

개정 2023.06.01.

개정 2024.02.20.

# 목차

<b>총칙</b>	7	
<b>I.</b>	<b>1. 의결권 일반</b>	8
<b>주주총회 일반</b>		
	1.1. 안건의 일괄 상정	
	1.2. 주주제안	
	1.3. 의결권 행사 방향	
	1.4.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	
	1.5. 지속가능경영	
<b>II.</b>	<b>1. 재무제표 승인</b>	9
<b>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</b>		
	1.1. 재무제표의 승인	
	<b>2. 배당 승인</b>	9
	2.1. 배당 정책	
	2.2. 배당금 지급 수준	
	2.3. 현물배당	
<b>III.</b>	<b>1. 총칙</b>	10
<b>정관 변경</b>		
	1.1. 사업목적의 추가 · 변경	
	<b>2. 주식</b>	10
	2.1. 발행예정주식총수	
	2.2. 비례적 주식분할 · 병합	
	2.3. 차등감자	
	2.4. 종류주식의 발행	
	2.5.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	

**3. 사채**

11

- 3.1. 특수사채
- 3.2. 주권관련사채의 우선매수권
- 3.3. 발행 대상과 한도

**4. 주주총회**

11

- 4.1. 결의 권한 주체의 변경
- 4.2.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
- 4.3.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

**5. 이사 및 이사회**

12

- 5.1. 집중투표제
- 5.2. 사외이사의 임기
- 5.3.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
- 5.4.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
- 5.5.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
- 5.6. 집행임원제도
- 5.7. 이사회 의장
- 5.8. 이사회의 소집
- 5.9.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

**6. 감사 및 감사위원회**

13

- 6.1. 감사위원회 설치

**7. 계산**

13

- 7.1.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권한 주체
- 7.2. 중간 · 분기배당

<b>IV.</b>	<b>1. 이사</b>	13
<b>임원 선임</b>	1.1. 이사 후보 요건	
	1.2. 성별 구성에 관한 법령 위반	
	1.3.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	
	<b>2. 사외이사</b>	14
	2.1. 사외이사 후보 요건	
	2.2.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	
	2.3. 사외이사 전문성 기준	
	<b>3.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</b>	15
	3.1. 감사 ·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요건	
	3.2. 감사의 상근 여부	
<b>V.</b>	<b>1. 이사 보수</b>	16
<b>임원 보수</b>	1.1. 이사의 보수한도	
	1.2. 보수와 경영성과	
	1.3. 성과보수의 지급 기준	
	1.4.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	
	1.5. 성과보수의 환수	
	1.6. 성과보수와 보수 정책	
	<b>2. 감사 보수</b>	16
	2.1. 감사의 보수한도	
<b>VI.</b>	<b>1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</b>	17
<b>주식매수선택권 부여</b>	1.1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	
	1.2.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	

---

<b>VII.</b>	<b>1. 임원 퇴직보상금</b>	17
<b>임원 퇴직보상금</b>	<b>1.1. 퇴직보상금</b>	
<b>VIII.</b>	<b>1. 기업구조 개편</b>	18
<b>기업구조 개편</b>	<b>1.1. 인수합병</b>	
	<b>1.2. 차입매수</b>	
	<b>1.3. 분할 및 분할합병</b>	
	<b>1.4. 자주회사 설립</b>	
	<b>1.5. 영업양도 · 양수</b>	
<b>IX.</b>	<b>1. 자본금 감소</b>	19
<b>기타</b>	<b>1.1. 자본금 감소</b>	
	<b>2. 상장폐지</b>	19
	<b>2.1. 자진 상장폐지</b>	
	<b>2.2. 조건부 상장폐지</b>	

---

## 총 칙

### 제 1 조 (제정의 목적)

'한국ESG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(이하 KRESG 가이드라인)'은 의결권 자문사로서 기관투자자 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하고, 상장회사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)

'KRESG 가이드라인'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한다.

-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주가치의 균형
- 국내 경영 환경 고려
- 연구소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(스튜어드십 코드) 준수

### 제 3 조 (선관주의의무)

'KRESG 가이드라인'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상정 안건의 정당성 및 결의 결과가 주주가치, 기업가치,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.

### 제 4 조 (의안분석 결과의 게시)

한국ESG연구소는 의안분석 보고서를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게시일을 변경하거나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### 제 5 조 (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)

'KRESG 가이드라인'은 국내 법령 및 제도의 변경을 고려하여 연 1회 정기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.

### 제 6 조 (용어의 정의)

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최대주주"란 「상법」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.
- ② "특수관계인"이란 「상법」 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
- ③ "주요주주"란 「상법」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.
- ④ "임원"이란 이사, 감사 및 「상법」 상 집행임원을 말한다.
- ⑤ "계열회사"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1 호, 제 1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.

**I****주주총회 일반****1. 의결권 일반****1.1. (안건의 일괄 상정)**

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안건의 개별상정에 찬성하고, 일괄상정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안건 내의 개별 안건 모두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.

**1.2. (주주제안)**

- ① 「상법」 제 363 조의 2 및 같은 법 제 542 조의 6에 의한 주주의 권리 행사로 상정된 안건의 경우, 상정된 안건의 정당성 및 결의 결과가 주주가치, 기업가치,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.
- ②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.

**1.3. (의결권 행사 방향)**

사안별로 검토하여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건에 찬성하고, 반대로 주주권익을 약화시키는 안건에 반대한다.

**1.4. (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)**

주주총회 안건 세부사항이 주주총회 전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반대한다.

**1.5. (지속가능경영)**

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주주가치, 책임투자 타당성, 수탁자책임활동 및 기타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.

**II****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****1. 재무제표 승인****1.1. (재무제표의 승인)**

독립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'적정'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 안에 반대한다.

**2. 배당 승인****2.1. (배당 정책)**

회사가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개하고, 이러한 배당 정책에 의해 배당을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.

**2.2. (배당금 지급 수준)**

회사의 이익규모, 현금흐름, 투자기회, 부채비율, 배당가능이익 등 재무상황, 동종업계 배당수준, 배당지급이력,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규모, 총주주환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배당금 지급 수준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 또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.

**2.3. (현물배당)**

금전 외의 재산으로 현물배당하는 경우 현물의 시장성,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.

**III****정관 변경****1. 총칙****1.1. (사업목적의 추가 · 변경)**

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목적을 추가·변경하여 주주가치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한다.

**2. 주식****2.1. (발행예정주식총수)**

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하여 그 목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찬성한다.

-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려는 목적인 경우
- 구조조정 및 재무개선을 위한 경우 또는 상장폐지 등 경영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
- 기타 증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**2.2. (비례적 주식분할 · 병합)**

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찬성한다.

**2.3. (차등감자)**

발행주식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안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경영 부실의 책임을 지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.

**2.4. (종류주식의 발행)**

회사의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는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은 찬성한다.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한다.

-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특정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
-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를 과다하게 희석하는 경우
-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
- 정관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

## 2.5. (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)

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. 다만,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.

-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
-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
- 발행수량의 규모,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존주주의 주식가치 및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

## 3. 사채

### 3.1. (특수사채)

- ①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 주권관련사채와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는 명칭 여하 불문하고 사채 발행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한다.
- ② 정관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반대한다. 다만, 기발행된 특수사채에 의한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.

### 3.2. (주권관련사채의 우선매수권)

- ① 주권관련사채 발행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특정 주주 또는 제 3 자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.
- ② 특정 주주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주권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'III.2.5. (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)'을 준용한다.

### 3.3. (발행 대상과 한도)

사채의 발행 대상과 한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경우 반대한다.

## 4. 주주총회

### 4.1. (결의 권한 주체의 변경)

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주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반대한다.

### 4.2. (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)

- ①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건은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.
- ②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하여 초다수결의제(超多數決議制)를 도입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.

### 4.3. (전자투표 및 서면투표)

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도모해 다양한 주주 참여를 지원하도록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.

## 5. 이사 및 이사회

### 5.1. (집중투표제)

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반대한다.

### 5.2. (사외이사의 임기)

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안에 반대한다.

### 5.3. (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)

「상법」 제 400 조 제 2 항에 따라 같은 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,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.

### 5.4.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이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 시 과도한 규모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 반대한다.

### 5.5. (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)

- ①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안에 반대한다.
- ②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 반대한다.
- ③ 다양한 성별(性別),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하는 등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하는 안에 찬성하고, 다양한 구성에 반하는 안의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반대한다.

### 5.6. (집행임원제도)

이사회의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그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찬성한다.

### 5.7. (이사회 의장)

- ① 고위경영자(CEO 등)와 이사회 의장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,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.
- ②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,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.

### 5.8. (이사회의 소집)

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단축하는 경우 반대한다.

### 5.9. (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)

- 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가 이사회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,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찬성한다.
- ② 「상법」 상 감사위원회,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해당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찬성한다.
- ③ 이미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.

## 6. 감사 및 감사위원회

### 6.1. (감사위원회 설치)

- ① 상근감사 선임 의무가 없는 회사가 「상법」 제 415 조의 2에 따라 감사에 같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같은 법 제 409 조 제 2 항의 의결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함인 경우에는 반대한다.
- ② 「상법」 제 542 조의 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같은 법 제 542 조의 11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.

## 7. 계산

### 7.1. (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권한 주체)

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는 경우 반대한다.

### 7.2. (중간 · 분기배당)

중간 · 분기배당을 도입하는 경우 찬성한다.

## IV

## 임원 선임

## 1. 이사

### 1.1. (이사 후보 요건)

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.

- 흉령, 배임 등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현저한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행정적 · 사법적 제재를 받고 그 제재가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
-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향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
-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평균 이사회 참석률이 75% 미만인 경우
- 기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

### 1.2. (성별 구성에 관한 법령 위반)

성별 구성에 관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165 조의 20 적용을 받는 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의장 또는 사외이사(또는 임원)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.

### 1.3. (최고경영자 승계 정책)

최고경영자 경영 승계와 관련된 담당조직, 내부규정, 후보군 선정 및 교육, 비상시 선임 절차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의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될 이사 선임 안에 찬성한다.

## 2. 사외이사

### 2.1. (사외이사 후보 요건)

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.

- 'IV.1.1. (이사 후보 요건)'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
- 'IV.2.2. (사외이사 독립성 기준)'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
- 해당 회사 외에 2 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 · 집행임원 · 감사로 재직 중인 경우
-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, 비상임이사,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경우
- 기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2.2. (사외이사 독립성 기준)

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.

- 해당 회사, 계열회사, 기업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(이하 '해당회사 등'이라 한다)의 상근임직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등의 상근임직원이었던 자
-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
-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·비속
-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법률 ·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
- 해당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한 경우
-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임하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경우

### 2.3. (사외이사 전문성 기준)

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.

- 전문경영인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금융, 경제, 경영, 법률,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10년 이상 동종 업계에 종사한 자
-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한 자

## 3.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

### 3.1. (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요건)

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독립성 또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임에 반대한다.

- 사외이사의 선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 보수 중 회계감사 이외의 다른 경영 컨설팅 비용 등 과도한 비감사 용역 보수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
- 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법령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### 3.2. (감사의 상근 여부)

상근감사 후보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경우 당해회사에서 상근감사로서의 충실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.

**V****임원 보수****1. 이사 보수****1.1. (이사의 보수한도)**

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찬성한다.  
다만,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.

- 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금액 수준이 경영 성과 및 기업규모 대비 과다한 경우
- 업종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당기 보수 실지급액이 차기 보수한도에 크게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차기 보수한도를 인상하는 경우
- 총주주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한도를 인상하는 경우
- 이사회 내 이사 인원수의 변동에 따른 보수한도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

**1.2. (보수와 경영성과)**

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이사의 보수에 반대한다. 단, 신규 이사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한다.

**1.3. (성과보수의 지급 기준)**

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 안에 대해서는 동종 업계,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.

**1.4. (성과보수의 이연 지급)**

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.

**1.5. (성과보수의 환수)**

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가 분식회계, 허위공시, 주가조작 등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찬성한다.

**1.6. (성과보수와 보수 정책)**

이사 개인별 보수를 성과에 연동하고,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근거,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.

**2. 감사 보수****2.1. (감사의 보수한도)**

감사의 보수한도 안에 대해서는 감사 인원의 증감, 실지급액, 다른 임·직원 평균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.

**VI****주식매수선택권 부여****1. 주식매수선택권****부여**
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한다.

- 연간 발행물량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3% 초과
-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

**1.1. (주식매수선택권 부여)**

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보수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,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.

**VII****임원 퇴직보상금****1. 임원 퇴직보상금****1.1. (퇴직보상금)**

- ① 임원에게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직 중 경영실적,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.
- ②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반대한다.

**VIII****기업구조 개편****1. 기업구조 개편****1.1. (인수합병)**

인수합병 안건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.

-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 여부
- 회사의 전망과 향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
-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배치 여부
- 인수 가격과 비율, 절차의 공정성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
- 시장 반응과 사회적 영향
-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, 시세조종 행위 등 기타 불공정 행위 개입 여부

**1.2. (차입매수)**

차입매수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인수합병은 법률적 타당성, 적격요건 충족여부, 가치평가, 이해상충,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한다.

**1.3. (분할 및 분할합병)**

분할 및 분할합병 안건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.

-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 여부
- 분할 비율, 절차의 공정성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
- 잔존 회사의 사업 지속성, 성장성, 수익성
- 분할신설 및 분할합병회사의 사업 지속성, 성장성, 수익성
- 주주의 지위 및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
-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, 시세조종 행위 등 기타 불공정 행위 개입 여부

**1.4. (지주회사 설립)**

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안별로 검토한다.

**1.5. (영업양도 · 양수)**

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중요한 영업양도·양수에 반대한다.

**IX****기타****1. 자본금 감소****1.1. (자본금 감소)**

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.

- 기업 회생, 구조조정 절차 등의 일환으로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주주가치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불가피한 경우
-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. 다만,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
- 경영진의 경영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차등 자본금 감소의 경우
- 자본금 적정화와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유상 감자의 경우
-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
-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**2. 상장폐지****2.1. (자진 상장폐지)**

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대한다.

-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액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한 경우
-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불합리한 공개매수 가격, 주식교환가격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**2.2. (조건부 상장폐지)**

소속시장 변경을 위한 조건부 상장폐지의 경우, 변경하고자 하는 소속시장의 인지도, 이전 상장의 상대적 장점 등을 검토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찬성한다.

**Compliance Notice**

본 <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> 자료는 한국 ESG 연구소에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주주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. 본 자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행한 주주총회의 결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, 누구든지 본 자료를 어느 주주총회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누구라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